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제 662 호

1978. 6. 8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758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
시행 규칙..... 3

○ 교 시

제 26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9

제 27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처적승인고시..... 20

제 27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 21

○ 공 고

제 233 호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 행허가공사완료..... 22

제 234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진흥생산자협회 지정
공고..... 23

○ 사 명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8년 6월 8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758 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 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설) 근로자 후생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실
2. 식 당
3. 목욕실
4. 이용실
5. 탁용실
6. 탁아실
7. 기술교도실
8. 예식장
9. 상담실
10. 기타시설

제 3 조 (수용인원) 후생시설의 수용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제 4 조 (이용자의 자격) 시지역 후생시설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한한다.

1. 숙박실 : 서울특별시에 6 개월 이상 거주한 영세근로자로서 18 세 이상 64 세 이하의 남자 및 16 세 이상 50 세 이하의 여자
2. 식 당·이용실, 목욕실 : 전 제 1 호의 해당자
3. 탁아실 : 취업여성의 자녀로서 6 세 이하인 아동
4. 기술교도 : 16 세 이상 50 세 이하의 부녀자

제 5 조 (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전 조 제 1 항의 숙박실을 이용할 수 없다.

1. 근로능력이 없는 위약자, 불구자 및 가족을 동반한자
2.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3. 퇴관후 2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 6 조 (후생시설의 이용 및 운영)

① 시지역 후생시설중 숙박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숙박원에 주민등록등본, 보건소장발령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전항의 소정 서류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대장에 통제하고 이용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이용이 결정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재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관자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간은 6개월이내로 하며 이용자는 퇴관시 반드시 재관증을 관장에게 반납한다.

④ 관장은 재관자 카드를 숙박증 인자와 퇴관자 별로 구분 관리하고 퇴관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아동을 위탁 시키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아동위탁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보건소장 발행 아동건강진단서 및 자모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숙박시간은 당일 09:00 부터 17:00 까지로 하며 탁아에 대하여는 주시

을 제공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보육일지를 비치한다.

⑦ 기술교도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강원서에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퇴관)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하여야 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였거나 건물또는 기물을 훼손한자
2. 숙박증을 타인에게 전매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자를 동숙시킨자.
3. 시설내에서 음주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자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가한자
5. 기타 관장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자

제8조(소지물의 제한) 후생시설 이용자는 그 기간중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기타 관장이 인정하지 않는 일체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제9조(직업안정) ①근로자퇴관에 병설된 직업안정소의 명칭 및 관

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장은 별지 제 9 호 서식에 의하여 전종별 구인, 구직, 취업 현황을 차분기 개시후 10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탁경영) ① 후생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0 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0 일전에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5 일 이내에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용료 3 개월분이 해당하는 보증금과 1 개월 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매월 5 일까지 산납하며 열광로 및 급수사용료를 따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권을 시장의 허가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부 칙

1. (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규칙)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립 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부녀복지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후생 시설 수용 정원표

명 칭	정 원	
	숙	박 아
서울특별시립 제 1 근로자회관	360	
" 제 3 "	192	
" 제 1 부녀복지관	232	80
" 제 2 "	204	80

(별표 2) 직업안정소 명칭 및 관할 구역

명 칭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립 제 1 직업안정소	양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천호출장소
서울특별시립 제 3 직업안정소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별지 제 1 호 서식

숙박원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월 수 입 액 :

위 본인은 귀회관에 재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
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귀하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없이 감수할것
을 서약하고 이에 숙박원을 제출하오니 청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설 및 구조의 무단변경 손상 및 멸실행위를 하지 아니함.
2. 재관증의 전매 또는 양여행위를 하지 아니함.
3. 회관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지 아니함.
4. 회관내에서 도박등 일체의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함.
5. 기숙중 정부 및 행정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6. 기숙중 정부 및 행정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7. 기숙중 회관측이나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8. 기숙중 관장의 지시명령에 절대복종 하겠음.
9.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기숙중 회관측이나 또는 동숙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겠음.

197 . 년 월 일

위원인



별지 제 2 호서식												
접 수 매 장												
인 적 사 항								조 치 사 항				
접 수		성 명	성년월일	학 력	직 업	월수입액	연 락 처		입 소 예정일	조치 사항	입소 월일	비 고
번호	월일						본인	제3자				
									1			
									2			
									1			
									2			
									1			
									2			
									1			
									2			
									1			
									2			
									1			
									2			

별지제 4호서식

사	재판자카드					입소일자	년	월	일		
						퇴소일자	년	월	일		
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	력						
본	척			주	소						
직	업		취업장소(공장명)	건	화	주 소					
			대표자성명	월급액		위 미					
			보직통위	자격면허		특 기					
가	족	판	제	부양가족수	결혼여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진	속	식	사	항	자취(비용)	원	하숙(비용)	원	기타(비용)	원	
병	역	판	제	역	종	지	급	군	번	병	과
				예	비	군	예	비	군	군	번
				중	대	명	교육		상	황	
정	당	판	제	가입정당명	가입년월일		지		위		
형	벌	판	제	과	명	부역기간		비		고	
자	판	제	칙	상경년월일	상경통기		합		속	기	관
신	원	조	회	및	신원조회	8.15 당시		전		강	진
전	강	진	단	결	과	거		주		지	결
								전		강	진
								결		과	

제 662 호

지

보

1978.6.8

24-9

531

24-10

제 662 호

시

보

1978.6.8

별지제 5 호서식		계		
		사무장	관장	
업 무 일 자				
197 년 월 일 요일				
구분 시설명	현	행	비	고
숙 박 실	1. 총 수	명		
	2. 퇴 소 자	명		
	3. 신 입 판 자	명		
	4. 재 숙 자	명		
	5. 사 용 료 징 수	원		
식 당	1. 총 수	명		
	2. 조 식	명		
	3. 석 식	명		
	4. 사 용 료 징 수	원		
이 용 실	1. 총 수	명		
	2. 대 인	명		
	3. 소 인	명		
	4. 사 용 료 징 수	원		
목 욕 실	1. 총 수	명		
	2. 사 용 료 징 수	원		
기 타	1. 이 용 자 총 수	명		
	2. 사 용 료 징 수 총액	원		

별지 제6호서식			
<u>아 동 위 탁 신청서</u>			
본	적		
주	소		
아 동	성 명	생	년 월 일 197 . . .
보 호	자 성 명	아 동	의 관 계 아동성별 남 , 여
준 수	사 항	수탁기간중 기관의 규칙과 지시를 준수 이행할 것을 서약함.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 . . .</p> <p style="text-align: center;">보 호 자 ③</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 제 부녀복지관장 귀하</p>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	
2.	건강진단서	1	
3.	증명사진	2	
4.	자모적성증명	1	

24-12

제 662 호

시

보

1978.6.8

별지 제 7 호서식

보 육 일 지

	계	사무장	관 장
197 년 월 일 요일			

1. 출석상황

- 1) 정 권
- 2) 현 원
- 3) 결 석
- 4) 조 퇴
- 5) 출 석

2. 보육기간 및 실천사항

3. 보육계획 및 실천사항

4. 기 타사항

(제 10 호 서식)

사 용 허 가 신청 서

소재지 :

사용시설 : 건평 평

부속시설 점 (별지 조서와 여함)

사용목적 :

사용기간 :

사용료 :

계약보증금 :

위와 같이 사용코자 사업계획서 첨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 12호 서식)

제 약 서

-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서울특별시립 근로복지관
- 2. 사용시설 : 전명 명방미
부속시설 점 (별지 조서와 이함)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 5. 사용료 : 일금 원정
-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상기와 여히 사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을 "갑"이라 하고 사용자
 자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
 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봉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자 1봉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장
 을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가”

제 1조 사용료는 갑이 발생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 5조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
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이의에는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 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건물 및 그 부속시
설을 보관할 책임을 진다.

제 3조 “을”은 계약체결후 즉시
“갑”의 입회를 요구하여 부속시
설에 대한 인수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4조 “을”은 “갑”의 허가 없
이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 하는일
- 2. 시설물 원상을 변경 하는일
- 3. 시설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권대하는일

제 5조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하시든지 “을”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갑”의 필요가 있을 때
- 2.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

3.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
할 경우에 있어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조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을”
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원상을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 7조 “을”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을”로
하여금 변상 시킨다.

제 8조 “을”이 계약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9조 사용기간 만료전 20일이내
“을”로 부터 계속 허가 신청이
없거나 또는 “갑”이 계속 사용을
거부할 때에는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을 사용 기간 만료의 익일로
부터 해약된 것으로 한다.

제 10조 제 7조 및 제 8조에 있어서
을이 배상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
로 충당하고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또는 주장한다.

제 11조 제 5조 1항 제 2호에 의하
여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12조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금은 연대
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 13조 “을”은 소속부서 내에 시설
된 일체의 물품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할것이며 만일 망실 또는 파손할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14조 열광로 및 급수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조 본 시설의 사용 또는 관리에 있어서 전기 각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사유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 요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16조 "울"은 위생관리 및 환경정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하되 관할 보건소에 위생검사를 매월 1회 이상 받아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7조 "갑"이 사용료를 재조성 청구할 경우 울은 통고 받은 이월부터 이에 따라 납부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9 호

도시계획 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 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도로 및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 건설부 고시 제 4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본 공사로 수용되는 토지, 건물등 재산에 관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

3. 민계도시는 성북구 토목서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6. 7

서울특별시장 (성북구청장)

- 가. 사업 시행지: 성북구 길음동 1168번지상 도로 및 1084-1125 6.
- 나. 사업 종류 및 명칭: 길음동 1084주변 하수도 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3= 6~8 L=770 M
하수도 (D=60) L=152.5 M
하수도 (D=45) L=347.5 M
- 라.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1978.4.6 - 1978.6.19.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조서
- 사. 토지 관계인 주소, 성명: 다음

공 사 토 지 가 격 조 서									
19 사 정									
번 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 정		소 유 차		비 고
					단가	금액	주 소	성명	
1	길음동 1167	도로	3,141㎡					서울특별시	
<p>◎서울특별시 고시 제 270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고시</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195 호 (78. 5.8) 로 결정 및 변경된 당시 도봉구 관내 도시 계획 시설중 2건을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 설부 고시제 41 호 (77. 3. 16) 의</p> <p>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지적 승인하고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면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8 . 6 . 7 .</p> <p>서울특별시 장</p> <p>도로 결정 조서</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중로	2	168	15M	60 M	수유동 중 (2-129)	수유동 대 1-8	도봉구청 앞	
	소로	2		8 M	240 M	수유 95-3	수유 48-73		
별첨 도면표시와 갈음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77. 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6.8.
서울특별시 장

○ 토선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복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중로	1	190	20M	1,140M	소격동 57 (대 1-3)	가회동산 1 (중 1-33)	
기정	"	2	38	15	1,380	팔판동 (대 3-1)	혜화동 (중 3-7)	
변경	"	"	"	"	200	"	삼정동 88	
"	"	"	38 -1	"	950	가회동 (중 1-33)	혜화동 (중 3-7)	실연장에 외거초정
폐지	"	3	4	12	315	소격동	팔판동	중 1-190 에 편입
신설	소로	2		8	180	강정동 43 (대 3-1)	청운동 89-30	
"	"	"		"	40	회기동 60-107	회기동 109-112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33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4호(76.10.30)로 시행허가된 동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동법시행령 제 7조 2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

가. 로선조서

의 권한위임 규정에 외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
한다.

2. 본 공사 완료에 관한 관계도서
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6.7.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복원	연장	시 점	종 점
신설	소로	4	4-6	278	등촌동 107-9	등촌동 107-25

나. 공원조서

구분	분 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신설	아동공원	(가칭) 선교사단지 공원	등촌동 107-15	450

이상 공공용지 별첨 측량성과도 참조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등촌동 산 84-4의 6필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 10,816
4. 사업시행자 : 서울시 강서구 등촌

- 동산 77-10 재단법인 한국 세계
기독교 선명회 이사장 한경직
5. 사업 착수 및 준공일
가) 착수일 : 76.11.24.
나) 준공일 : 77.12.10.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 지정 요령 제 3 조의
 지정 업체 조서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 지정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동요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8. 6. . .
 서울특별시 장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8년수출액(백만 원)	비고
987	삼양삼유공업사	김규남	영등포구 독산동 290-67	아크릴사염색	\$ 968,000	

사 명

○ 1978. 6. 1
 관 악 구 이 중 민
 지 방 서 기 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8. 6. 5

성명	발령 사항
한대성	중로구 1호봉 지방보건의원보시보 (평경)
차희환	강남병원 1호봉 지방보건의원보시보 (밤사)

성명	발령 사항
박도석	영등포병원 1호봉 지방보건의원보시보 (밤사)
정영환	영등포보건소 1호봉 지방보건의원보시보 (병리)

○ 1978. 6. 7
 서울특별시 김익수
 시 기 관
 지방서기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를 면함.

<p>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편의정</p> <p>지방 이사관에 임함. 지방본부 관리차장에 보함.</p> <p>감사담당관실 정원모 지방행정주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서울특별시장</p>	
--	--